

<부록 3> 설문지. 의료인 직원용

◇ 설문 일시 : 2015. . .

|  |  |   |  |  |  |
|--|--|---|--|--|--|
|  |  | - |  |  |  |
|--|--|---|--|--|--|

##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 (직원용)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정신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격리·강박과 관련한 시설, 제도, 절차, 관행 등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정신장애인과 의료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의 개인 신상정보는 일절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임채도 사무국장 ☎ 02-711-7588, 팩스 02-711-7589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 김근태기념치유센터 /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성가소비녀회 내 성재덕관 1층 <http://www.imhr.or.kr>





2-7. 현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하면, 적절한 수(2~3명)의 치료진이 격리·강박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격리·강박을 시행할 때 적절한 치료진의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명 )

2-8. 가장 최근 격리·강박을 시행했을 때에 몇 명이 격리·강박을 시행하였습니까?

( \_\_\_\_\_ 명 )

2-9. 현재 귀하께서 소속된 병원에서는 누가 격리·강박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 ① 정신과 의사    ② 간호사    ③ 보호사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 \_\_\_\_\_ )

2-10. 환자 격리나 강박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 ① 오전 6시~12시 경    ② 오후 1시~5시 경    ③ 저녁 6시~9시 경    ④ 밤 10시~새벽 5시 경

2-11. 격리·강박을 시행하면서 다른 환자들이 시행을 도우거나 간섭하는 경우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12. 환자 격리·강박 시 주치의나 당직 의사의 입회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

2-13. 귀 병원에서 격리·강박 전 화학적 강박을 시행하십니까?

- ① 거의 사용한다    ② 가끔 사용한다    ③ 사용하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다

2-14. 화학적 강박을 위해 어떤 주사약제를 사용하십니까?

( \_\_\_\_\_ )



2-15. 귀 병원에서 강박 시행 시 어떤 도구를 사용합니까? (복수응답)

- ① 천      ② 가죽      ③ 끈      ④ 기타(      )

2-16. 격리·강박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1시간마다 vital sign 체크, 2시간마다 팔다리 움직여주고 수시로 상태관찰, 화장실 사용과 음료수 제공 등)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2-17. 귀하께서 지시하거나, 목격한 격리 가운데 최장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 \_\_\_\_\_ 시간 )

2-18. 귀하께서 지시하거나, 목격한 강박 가운데 최장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 \_\_\_\_\_ 시간 )

2-19. 현재 귀 병원의 격리실(보호실)의 안전과 청결상태는 만족스럽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2-20. 현재 귀 병원의 격리실(보호실)은 간호사실에서 수시로 격리된 환자를 관찰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없지만 CCTV 로 대체하고 있다      ④ 기타 (      )

2-21. 현재 귀 병원의 격리실(보호실)은 격리실 환자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22. 보호실 격리·강박 중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보호실 시설 상 보완되어야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2-23. 격리·강박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 , , )

- ① 격리·강박 환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압박    ② 불필요한 화학적 강박 (PRN 등)
- ③ 환자, 보호자의 알권리 침해(설명 없는 격리·강박)    ④ 편이나 처벌 목적의 격리·강박
- ⑤ 격리·강박 중 환자의 존엄성 침해 (기저귀 착용 등)    ⑥ 성희롱, 성폭력
- ⑦ 욕설, 심리적인 인격 훼손    ⑧ 기타 ( )

2-24. 귀하가 속한 병원이 아닌 타 병원에서 발생했던 사례 중 귀하가 알고 있는 격리·강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2-25. 현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의 아래 내용 중 해당 사항에 기표해 주십시오.

|    | 지침 내용  | 그렇다 | 아니다 |
|----|--|-----|-----|
| 1  |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     |
| 2  | 격리 또는 강박 시행전과 시행 후에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한다.  |     |     |
| 3  | 환자는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 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한다.  |     |     |
| 4  | 치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지 않는다. (PRN 포함)   |     |     |
| 5  |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지 않으며, 안전을 위해 적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다   |     |     |
| 6  | 격리 또는 강박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복,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 보고한다 |     |     |
| 7  | 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준다   |     |     |
| 8  |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땀흘림)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대소변을 보게 하고,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한다  |     |     |
| 9  | 환자상태가 안정되어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사는 즉시 주치의(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유무를 확인한다.  |     |     |
| 10 | 양 팔목과 발목에 강박대를 착용시킬 때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며, 가슴벨트는 등뒤에서부터 양 겨드랑이 사이로 빼서 고정시키고 불편하지 않는가 확인하고 관찰한다.                                   |     |     |

2-26. 정신장애 환자 격리·강박에 관한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이 환자 권리 보호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2-27. 현 <격리 및 강박 지침> 중 보완되어야 할 점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2-28. 위 지침이 지켜지지 않거나 부당한 격리·강박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2-29.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을 3가지 골라주십시오.

(첫 번째 , 두 번째 , 세 번째 )

- ①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배제) 의식 등 사회적 인식 개선
- ② 정신장애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 ③ 법적 제도적 보호 규정, 지침 강화      ④ 보건행정 당국의 관리 철저
- ⑤ 적절한 의료인력의 확보      ⑥ 재정, 예산 투자
- ⑦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    ⑧ 기타 ( )

■ 3. 이상 질문내용 외 환자의 격리·강박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써 주십시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상담이나 의견이 계시는 분은  
인권의학연구소 (02-711-7588)로 연락주시거나  
조사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성심껏 함께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성가소비녀회 내 성재덕관 1층 <http://www.imhr.or.kr>

담당: 임채도(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장) [imhrc@naver.com](mailto:imhrc@naver.com)